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(법률 제17794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총괄·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의3 제3항 신설)
- 나. 국립정신의료기관(국립 춘천·공주·나주·부곡병원)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·운영하고, 필요시 안산(세월호)·포항(지진)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4 신설)
- 다.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9 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* 국립 춘천·나주·공주 병원의 '21년 예산에 권역트라우마
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기 반영)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
업무를 총괄·조정 및 지휘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
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정신병원에 법 제15조의2제
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(이하 “권역트라우마센터”라 한다)를
설치·운영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권역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하여
운영할 수 있다.

가.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에
따라 설치된 안산트라우마센터

나.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조에

따라 설치된 포항트라우마센터

다.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립 정신의료기관

③ 권역트라우마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권역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관계 행정기관,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39조제1항 본문 중 “제10조의3”을 “제10조의3, 제10조의4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트라우마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3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~ ② (생략)	제10조의3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총괄·조정 및 지휘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설></u>	제10조의4(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정신병원에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권역별트라우마센터(이하 “권역트라우마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<u><신설></u>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권역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u><신설></u>	가.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

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 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에 관한 사무	----- ----- ----- -----
3의3. ~ 17. (생 략)	3의3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872, 3873